

제89조제1항 중 “제86조제2항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86조제2항 및 제87조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참여한 자

제92조의2제1항 본문 중 “제3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로 한다.
대통령령 제2157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본문 및 단서 중 “2011년 12월 31일”을 각각 “2013년 12월 31일”로 한다.

대통령령 제2228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 단서 중 “2012년 1월 1일”을 “2014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찰서의 제출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2호·제12호의2, 제39조제1항 및 제2항, 제40조제3항, 제76조제1항제11호 및 제92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설계비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89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의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체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201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시행을 2년간 유예하고, 혁신도시건설사업의 추진 지연에 따라 2011년 말 일몰 예정인 지역의무 공동계약 확대제도를 연장하는 한편, 입찰서 제출 시 서면입찰 대신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전자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설계비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 권도엽

●대통령령 제23478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 또는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 이 경우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호에서 “모회사”(母會社)라 한다]는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호에서 “자회사”(子會社)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하여야 하고, 모회사의 자산관리회사와 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동일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국민연금공단 또는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 이 경우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호에서 “모회사”(母會社)라 한다]는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호에서 “자회사”(子會社)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하여야 하고, 모회사의 자산관리회사와 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동일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중 “5명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시: 3명 이상
2. 법 제9조에 따라 영업인가를 받은 후 6개월 경과 시: 5명 이상

제2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등록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를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해 준 경우”로 한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업무가 제25조에 위반되는 경우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27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모든 금액

제31조제2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다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요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공단 등이 지배력을 보유한 부동산투자회사가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공모의무를 면제하고, 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를 인정하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탄력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확보의무를 완화해주고, 부동산에 포함되는 자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자산구성 제한 및 증권에 대한 투자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며,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부동산투자자문회사를 등록하려는 자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등록을 해주도록 하여 등록 여부에 대한 민원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행정청은 법령에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자의적으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식의 공모의무 면제 및 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인정(안 제12조의2제16호 및 제13조제1항제15호 신설)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이 단독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가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하고 그 자산관리회사가 동일하면, 다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제하고, 1인당 주식소유한도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함.

나. 자산운용 전문인력 확보의무 완화(안 제18조제1항)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탄력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영업인가 시 3명 이상, 영업인가를 받은 후 6개월 경과 시 5명 이상으로 구분하여 확보하도록 함.

다. 부동산에 포함되는 자산의 범위 확대(안 제27조제1항제7호 신설)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구성하는 부동산에 포함되는 자산을 산정하는 경우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모든 금액을 그 자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라. 증권 투자 제한의 예외 추가(안 제31조제2항제13호 신설)

부동산투자회사가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동일인이 발행한 주식을 총자산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금융위원회 소관)

●대통령령 제23479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